투자위험등급 :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기은SG자산운용㈜**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기은SG 골드마이닝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은SG 골드마이닝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기은SG 골드마이닝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2. 집합투자업자 명칭	기은SG자산운용 주식회사
3. 판매회사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www.ibksgam.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기준일	2009년 4월 16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09년 5월 4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모집(매출)총액]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10조좌]
7. 모집(매출)기간(판매기간)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증권신고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 → http://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홈페이지 → www.kofia.or.kr

서면문서: 집합투자업자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참조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중 일부가 변경 될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 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변경 될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투자결정 시 유의사항]
[대표이사 등의 확인·서명]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나. 운용자산별 종류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마. 특수형태 표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나. 투자제한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나.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가. 일반위험
나. 특수위험
다. 기타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나. 환매
다. 전환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나. 과세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가. 요약재무정보
나. 대차대조표
다. 손익계산서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 기준)
나. 연도별 수익률(세전 기준)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제 4 부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나. 주요 업무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 운용자산 규모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총회등

(1) 투자자총회의 구성

(2) 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나. 잔여재산분배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라. 손해배상책임

마. 재판관할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2) 자산운용보고서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4) 기타장부 및 서류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2) 수시공시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붙임]용어풀이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등의 확인·서명

확 인 서

우리는 이 **기은SG 골드마이닝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의 발행인인 기은SG자산운용회사의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담당 이사로서 이 증권신고서의 기재내용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검토한 결과, 중요한 기재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의 누락이나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없고, 이 증권신고서에 표시된 기재 또는 표시사항을 이용하는 자의 중대한 오해를 유발하는 내용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9년 04월 29일

기은SG 골드마이닝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기은SG자산운용주식회사 대표이사 쟝 샤를 델크로아 (서명)

기은SG자산운용주식회사 신고업무담당이사(부사장) 이 영 우 (서명)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 칭	기은SG 골드마이닝 증권 자투자신탁[주식](67615)				
(종류) 클래스	종류 A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e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67616	67167	73099	70983	76988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표시 : 종류형(판매보수 및 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 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으로 모집규모나 모집기간을 따로 정해두지 않습니다.

*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및 판매됩니다

나. 모집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ibksgam.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모집(매입) 또는 배정절차 및 방법

(1) 기준시간(오후 3시)이전에 매입을 신청하는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배정됩니다.

(2) 기준시간(오후 3시)경과후에 매입을 신청하는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배정됩니다.

* 그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기은SG 골드마이닝 증권 자투자신탁[주식](67615)

(종류A : 67616, 종류C1: 67617, 종류C2: 73099, 종류C3: 70983, 종류Ce: 76988)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일자	내용
2007.04.13	최초설정
2007.06.29	집합투자규약 변경(클래스 C3추가)
2007.10.02	집합투자규약 변경(클래스 Ce추가)
2009.05.04	자본시장법에 따라 펀드 명칭 변경 (SG 골드마이닝 주식자투자신탁→ 기은SG 골드마이닝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기은SG자산운용㈜

*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투자신탁의 업무의 위탁]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자산 중**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한 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고 있으며,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은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게 있습니다.

①업무 위탁 집합투자업자 및 업무위탁 범위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 Société Générale Asset Management S.A.

업무위탁범위 – 외국통화표시자산(금광업관련 주식 등)에 대한 운용업무,운용지시,단순매매주문업무

5. 운용전문인력

① 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 운용 자산규모	
유치영	1964	상무	48개	73,739억	- 연세대 대학원 경제학 - 2001년 PCA투신 채권운용팀 - 1990년 국민투신 투자공학팀

* 이 투자신탁의 국내운용은 AI운용팀이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② 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해당사항 없음

* 2009.01월 현재 기준 최근 3년간의 책임운용전문인력 내역입니다.

다. 업무 위탁 운용회사인 Société Générale Asset Management S.A.의 책임운용전문인력의 개요

성명	직위	운용중인 자산규모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Eric Bramoullé	부사장	U$ 294,010,921	- Comodity 섹터, 파생상품 운용(1999~현재) - State Bank of India(SBI)의 Investment 팀 부사장 (2005~2007) - SGAM Equity Management 부사장(2007~현재)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증권(주식형) 투자신탁, 종류형, 모자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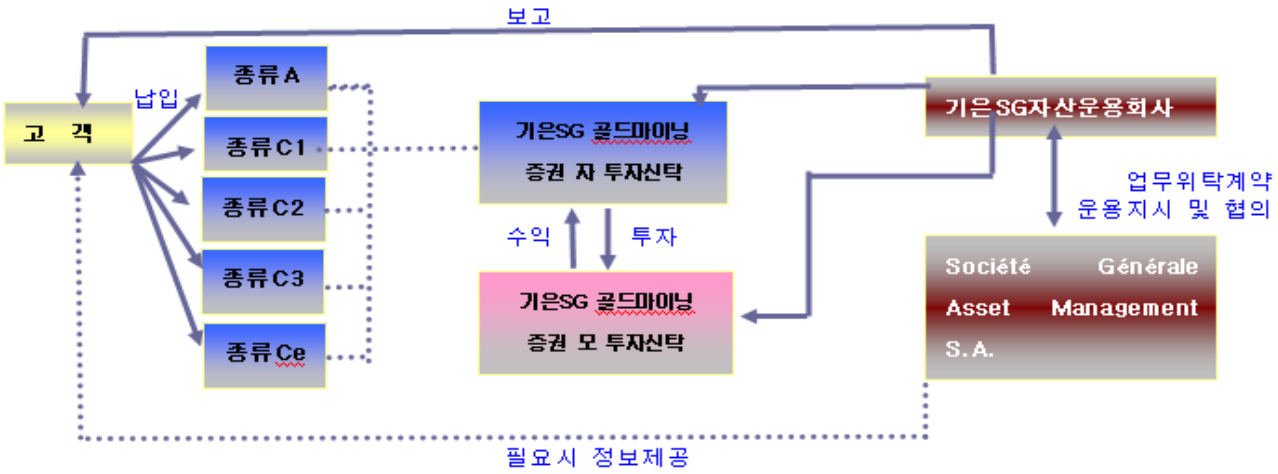

나.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투자신탁으로써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별	최초 설정일	가입자격	보수	환매수수료	선취 판매수수료
A 클래스 (펀드코드 : 67616)	07.04.13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판매보수 - 연 1.00	①30 일 미만 이익금의 70%, ②30 일이상~90 일미만 이익금의 30%	납입금액의 1%
C1 클래스 (펀드코드 : 67617)	07.04.13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판매보수 - 연 1.80	90 일 미만 이익금의 70%	없음

C2 클래스 (펀드코드 : 73099)	07.08.30	랩어카운트 고객	판매보수 - 연 0.00	90 일 미만 이익금의 70%	없음
C3 클래스 (펀드코드 : 70983)	07.06.29	납입금액이 100 억 이상인 고객	판매보수 - 연 0.10		
Ce 클래스 (펀드코드 : 76988)	07.12.11	온라인(On-Line)전용 가입자를 위한 수익증권	판매보수 - 연 1.40		

다. 모자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법제 233 조에 의거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써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집합투자신탁 내의 다른 모 또는 자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투자신탁 / 자투자신탁	기은SG 골드마이닝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기은SG 골드마이닝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신탁재산의 90%이상 투자

(모투자신탁인 기은SG 골드마이닝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에 관한 사항)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신고서제출일
- 자산총액의 60%이상을 금광업 관련 상장된 기업의 주식 등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투자수익 추구 - 각 투자되는 기초자산의 통화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USD 에 대하여 환헷지전략을 수행하며, USD 와 실질 투자 통화간의 환율변화에 대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모투자신탁임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금광업 관련 상장된 기업의 주식등에 투자하는 기은SG 골드마이닝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의 수익증권에 투자하여 증권의 가격상승에 따른 수익추구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 대상

투자대상종류	투자한도	투자대상 조건
1.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	90% 이상	집합투자규약 제3조제4항 각 호의 모투자신탁으로서 기은SG 골드마이닝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2.단기대출 및 금융기관 예치	10%이하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3.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운용하고 남은 현금을 법시행령 제2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방법(외화표시 자산을 포함)

[투자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 제18조 제1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집합투자규약 제18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규약 제19조제1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③집합투자규약 제19조제1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모펀드 주요 투자 대상]

(1) 기은SG 골드마이닝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투자대상 종류	투자한도	투자대상 조건
1.주식	60%이상	법 제4조제4항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 · 귀금속 등 금광업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등이 발행예정 또는 발행한 지분증권 및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2. 채권	40%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는 제외)
3.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을 포함)

4.어음	4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을 포함)
5.금리스왑거래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	
6.집합투자증권등	5%이하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30%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7.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	매매에따른 위험평가액이 10%이하	법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8.환매조건부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
9.증권의 대여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11.단기대출 및 금융기관 예치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외화표시 자산을 포함)	
12.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운용하고 남은 현금을 법시행령 제 268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방법(외화표시 자산을 포함)	

[투자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 제18조 제1호 내지 4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집합투자규약 제18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규약 제18조제5호 내지 제10호, 제19조제2호 내지 제7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③집합투자규약 제19조제5호본문, 제4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나. 투자 제한

(1)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

[모펀드 투자 제한]

(1) 기은SG 골드마이닝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예외
단기대출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ㅇ 법 제 83 조제 4 항에 따른 단기대출 ㅇ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
동일종목투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합니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ㅇ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ㅇ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	

	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합니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합니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제외)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ㅇ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파생상품	ㅇ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ㅇ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ㅇ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ㅇ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계열회사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후순위채투자	이 투자신탁 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가. 투자 전략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인 **기은SG 골드마이닝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에 90%이상을 투자하여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모투자신탁인 기은SG 골드마이닝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의 투자전략]

자산의 60%이상을 **금 및 귀금속등 금광업 산업 관련 상장된 기업의 주식 등에 투자**하여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수익률을 추구합니다.

각 투자되는 기초자산의 통화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USD에 대하여 환헷지를 수행하며, USD와 실질투자 통화간의 환율변화에 대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헷지의 범위는 운용역의 판단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해외위탁운용회사 변동 시 기은SG자산운용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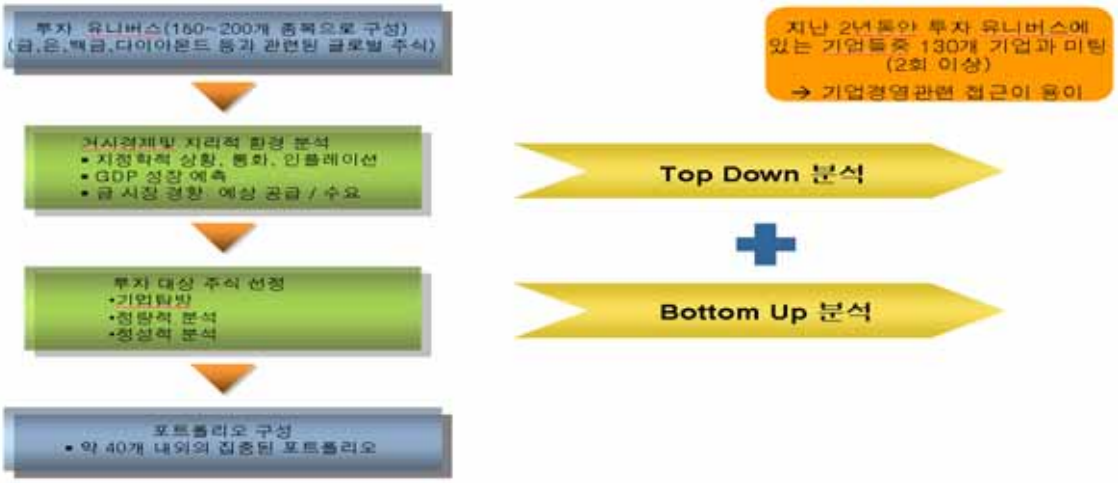

* 포트폴리오 구성절차를 설명한 것으로 시장상황에 따라 투자유니버스 및 투자종목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 등을 위해서 아래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시에는 기은SG자산운용의 홈페이지(www.ibksgam.com)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 비교지수 : FTSE Gold Mines 90% + 콜론 10%**

[금광업 산업 관련 주식시장 현황]

시장에서 금보석류의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 하고 있으며, 중국, 러시아 등의 중앙은행이 금보유액을 증가시키겠다고 밝히는 등 시장에서 활용 가능한 금의 공급 감소추세로 관련 회사들은 높은 수익을 내고 있으나 인플래이션에 대한 위험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①금가격과 보석류의 수요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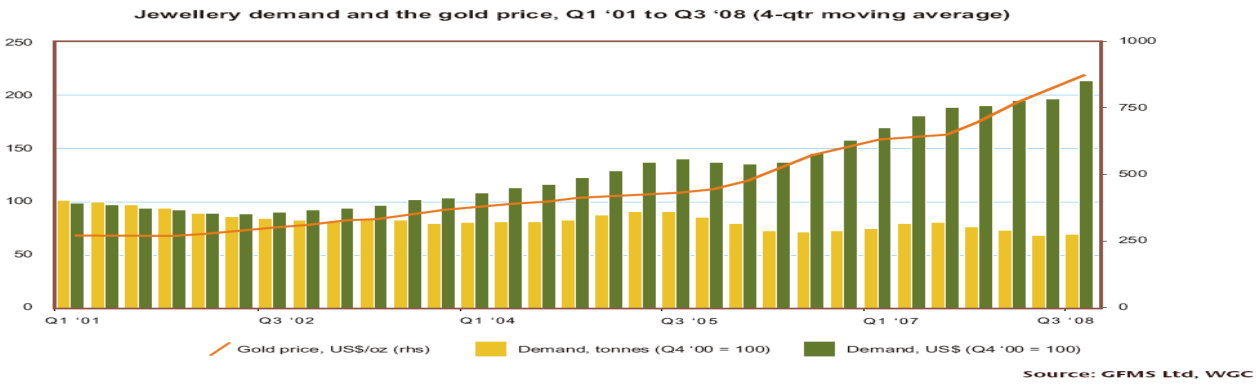

나. 위험 관리

이 투자신탁에서는 기본적으로 환헷지 전략을 실행하지 않고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서 환헷지 전략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모투자신탁의 환헷지 전략은 반드시 별첨의 모투자신탁의 등록신청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헷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없애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해외펀드의 대부분은 해외통화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헷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될 수 있으며 환헤지 계약의 만기후 재계약을 할 경우 헤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금광업 관련 산업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라 주된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해외주식 등에 투자함으로써 이 투자신탁은 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주로 외화표시 해외증권에 투자하므로 환율변동 및 시간차이에 따라 신탁재산의 가치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투자되는 기초자산의 통화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요 통화에 대하여 환헷지를 수행함으로써 환율변동 위험을 최소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환율변동위험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거래량이 적은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증권의 유동성 부족으로 신탁재산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유동성 부족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환매연기위험	특별한 사유로 인해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 신고서의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매입,환매,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의 나.환매 '환매연기사유'에서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환매청구일로부터 제8영업일(오후3시이후 환매청구시 제9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하므로 환매청구시와 환매대금지급일까지의 기간 동안 투자신탁재산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게 되는 주식형 모투자신탁은 금광업 관련 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채권등에 비하여 가격변동성이 큰 위험이 있으므로 5등급 중 1등급에 해당되는 매우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채권에만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채권형)보다 훨씬 높은 위험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여 해당 투자신탁 투자대상국가의 경제여건의 변화와 주식의 가치변동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하며 외국통화로 표시된 투자 대상 국가의 주식과 관련된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투자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투자위험등급 기준>

위험등급	분류기준	
1등급	매우높은위험	- 주식편입비율이 신탁계약상 60% 이상인 증권투자신탁 주) -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으로서 최대손실 가능비율이 투자원금 대비 20% 이상인 경우주)
2등급	높은위험	- 주식시장 인덱스를 추종하는 증권투자신탁(신탁계약상 주식 편입 비율 60% 이상) - 최대 주식편입비율이 신탁계약상 30%초과 ~ 60% 미만인 증권투자신탁 - 후순위채권, 투기등급채권 등에 주로 투자하는 고수익고위험 증권투자신탁 -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으로서 최대손실 가능비율이 투자원금 대비 20% 미만인 경우
3등급	중간위험	- 최대 주식편입비율이 신탁계약상 30% 이하인 증권투자신탁 -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으로서 최대손실 가능비율이 투자원금 대비 10% 미만인 경우
4등급	낮은위험	- 투자등급 이상의 회사채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 -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으로서 원금보존추구형
5등급	매우낮은위험	- 국공채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 - MMF

*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당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인 기은SG자산운용의 내부기준입니다. 따라서 다른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 주식시장 인덱스를 추종하는 증권투자신탁을 제외합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자격은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종류A : 가입제한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 종류C1 : 가입제한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 종류C2 : 랩어카운트 고객
- 종류 C3 : 납입금액이 100 억 이상인 투자자
- 종류 Ce : 온라인(On-Line)전용 가입자를 위한 수익증권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3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다음 영업일(D+1)**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나) **오후 3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경우: **자금을 납입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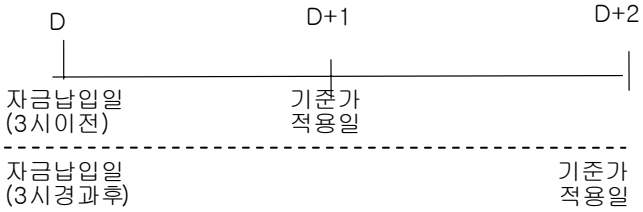

주1)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4) 선취판매수수료

Class A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시점에 선취판매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 으로 나눈 금액)의 1%입니다.

(5) 매입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15시[오후 3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오후 3시] 경과 후 매입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의 취

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관련 추가적인 유의사항이 '제 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Ⅳ.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1. 매입관련 유의사항'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날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D+7)**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오후 3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5영업일(D+4)**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D+8)**에 환매대금이 지급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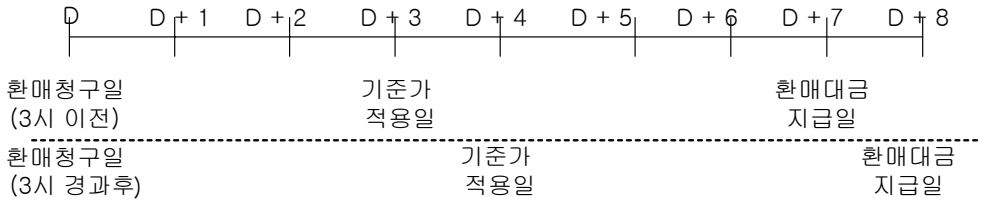

주1)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다) 상기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국가의 거래소가 영업일이 아닌 경우 환매 일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환매수수료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차등부과하며, 부과된 수수료는 투자신탁의 재산으로 편입됩니다.

구 분		지급비율(%)		비고
종류		종류A	종류 C1,C2,C3,Ce	(지급시기)
환매수수료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	환매시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	환매시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환매시

* 단 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5시[오후 3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오후 3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 6영업일 (1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전 7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환매연기사유

(가)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 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② 증권시장이나 해외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 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③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 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② 투자신탁 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③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다)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라) 그 밖에 (가)부터 (다)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 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간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펀드간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펀드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공시장소	판매회사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ibksgam.com)·판매회사·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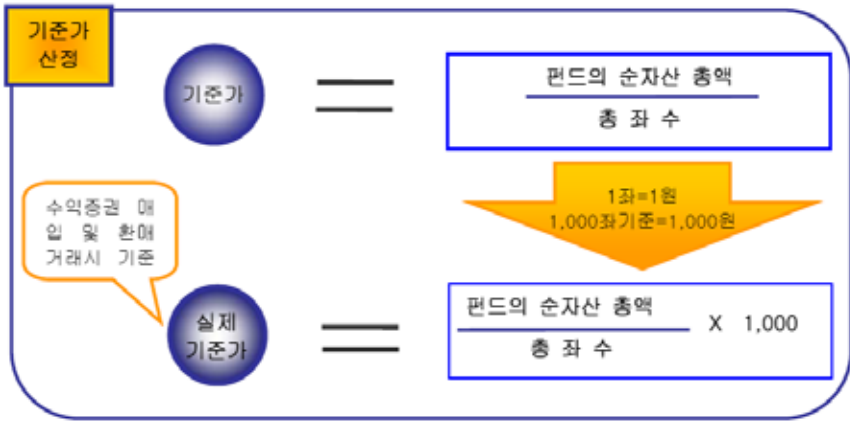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①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②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③장외파생상품	당해 파생상품의 발행회사 또는 채권평가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한 가격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그 신고한 방식으로 산정된 가격
금리스왑	*** 평가회사의 가격평가 방법** 국내 KRW IRS금리 및 USD를 비롯한 주요 통화 IRS 금리를 기초로 하여 고정금리부분 평가와 변동금리부분평가에 의한 차이에 의해 가격을 평가함
④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⑤비상장채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산술평균한 가격(상장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합니다)
⑥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⑦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⑧외화표시 증권	외화로 표시된 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시장의 최종시가
⑨외화표시자산을 한국원화로 환산하는 환율	외화로 표시된 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외화를 원화로 환산하는 환율은 평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에서 고시하는 최근거래일의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로 한다. 이 경우 외국환중개회사가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전자매체 등을 이용하여 미리 고지한 환율이 잇는 경우에는 그 환율을 사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⑩ 기타 상기에 명시된 자산 이외에는 관련법령 및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평가한 가격으로 평가합니다.

※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업무 담당임원, 운용업무 담당임원, 준법감시인으로 구성되는 별도의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의 준수적용여부 등을 반기마다 집합투자업자의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판매회사는 법 제 76 조제 4 항에서 정한 판매보수 및 수수료와 관련하여 해당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부과기준
보수구조	종류 A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e	
선취판매수수료	1%	해당사항 없음				납입금액
환매수수료	70%	해당사항 없음				30 일미만 이익금
	30%	해당사항 없음				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
	해당사항 없음	70%				90 일 미만 이익금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 (연간,%)					지급시기
보수구조	종류 A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e	

수익자의 자격	선취판매수수료 있는 경우	선취판매수수료 없는경우	랩어카운트 고객	납입금액 100억이상가입자	온라인가입자	
집합투자업자보수	1.00					매 3 개월 후급
판매회사 보수	1.00	1.80	0.00	0.10	1.40	
신탁업자 보수	0.07					
일반사무관리보수	0.02					
기타 비용	0.0030					사유발생시
총보수 및 비용	2.0930	2.8929	1.0900	1.21	2.4928	-
합성 총보수 및 비용(TER)	2.1961	2.9487	1.0902	1.21	2.4949	
매매수수료 비용	0.2654	0.1469	0.0006	0.2654	0.0123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매매수수료 제외)으로써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 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원)

집합투자기구	투자기간	1 년	3 년	5 년	10 년
종류 A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19,766	726,875	1,335,634	3,409,289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	230,587	762,665	1,401,398	3,577,156
종류 C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303,757	1,004,677	1,846,095	4,712,274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	309,618	1,024,062	1,881,713	4,803,191
종류 C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14,450	378,543	695,573	1,775,495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	114,475	378,626	695,725	1,775,883
종류 C3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24,025	390,989	685,316	1,559,973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	124,025	390,989	685,316	1,559,973
종류 C-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61,743	865,714	1,590,749	4,060,487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	261,968	866,458	1,592,116	4,063,9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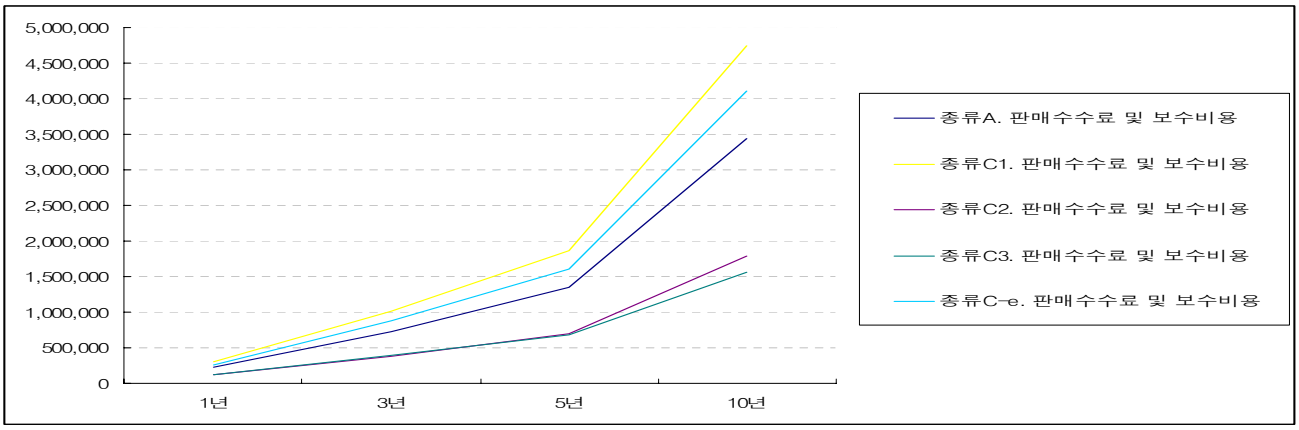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①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②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③ 수익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세금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신탁에서 납부한 채권 등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모두 환급을 받고 있으며,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환급세액 = 외국납부세액 X 환급비율

환급비율 : (사업연도 총소득-국내비과세소득)/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
단, 환급비율 > 1이면 1, 환급비율 <0 이면 0으로 함.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펀드가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권거래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2) 세제혜택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수익자에 대한 일반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 또는 계약을 연장하는 날에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의 과세상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 6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거주자에 한하여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도 수익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상장주식 등에 대한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수익자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국내외상장주식 등의 매매 및 평가 손실이 채권이자, 주식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환차익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나) 2007년 6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외국상장주식이 평가이익보다 2007년 6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외국상장주식의 평가손실이 더 큰 경우(∵2007년 6월 1일 이전 가입한 수익자에 한하여 2007년 6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외국상장주식 평가 이익부분은 수익자의 과세대상 이익에 포함)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세율 35%)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최고 한도세율 22%)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증권거래세 면제대상 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경우 공모투자신탁임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일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일정요건이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합니다.**

①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 법제9조제7항 및 제9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될 것

②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수가 30인을 초과할 것

③30인(수익자가 15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전체 투자신탁 수익자 수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수)이하의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총수의 100분의 95이상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단, 모자형투자신탁에 대하여는 모든 자투자신탁의 수익자를 모투자신탁의 수익자로 봄.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본 집합투자기구의 재무정보에 관한 자료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감사의견은 적정입니다.

1. 재무정보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원,%)

대차대조표		
항 목	제2기 08.10.12	제1기 08.4.12
운용자산	0	0
증권	17,679,518,489	49,715,722,024
파생상품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현금 및 예치금	416,877,364	674,265,448
기타 운용자산	0	0
기타자산	0	0
자산총계	18,096,395,853	50,389,987,472
운용부채	262,138,782	648,061,440
기타부채	0	0
부채총계	262,138,782	648,061,440
원본	24,028,316,054	42,937,751,696
수익조정금	6,442,999,509	0
이익잉여금	-12,636,810,333	6,804,174,336
자본총계	17,834,505,230	49,741,926,032

손익계산서		
항 목	제2기 08.04.13~08.10.12	제1기 07.04.13~08.04.12
운용수익	-14,294,355,793	11,485,241,595
이자수익	11,494,223	20,957,256
배당수익	6,793,670,713	0
매매/평가수익(손)	-22,121,167,285	11,416,327,772
기타 수익	1,021,646,556	47,956,567
운용비용	13,372,599,501	12,972,481
관련회사 보수	915,754	1,980,000
매매수수료	44,556	53,536
기타비용	13,371,639,191	10,938,945
당기순이익	-15,318,547,388	11,472,269,114
매매회전율	0	0

나. 대차대조표 (단위:원)

계 정 과 목	제 2 기 반기	제 1 기
	08.10.12	08.04.12
자 산		
I. 운 용 자 산	17,906,506,227	49,809,261,651
1. 현금 및 예치금	26,563,873	273,830,590
예 치 금	26,563,873	273,830,590
증 거 금		
2. 대 출 채 권	390,000,000	400,000,280
콜 론	390,000,000	400,000,280
R P 매 수		
매 입 어 음		
대 출 금		
3. 유 가 증 권	17,489,942,354	49,135,430,781
지 분 증 권		
채 무 증 권		
수 익 증 권	17,489,942,354	49,135,430,781
기타 유가증권		
4. 파 생 상 품		
파 생 상 품		
5. 부동산 및 실물자산		
부 동 산		
실 물 자 산		
6. 기타 운용자산		
기타 운용자산		
II.기 타 자 산	189,889,626	580,725,821
1. 매도가능증권미수금	189,576,135	580,291,243
2. 정 산 미 수 금		
3. 미 수 이 자	313,491	434,578
4. 미 수 배 당 금		
5. 기 타 미 수 금		
6. 외화환산손익조정		
7. 파생상품평가손익조정		
자 산 총 계	18,096,395,853	50,389,987,472
부 채		
I. 운 용 부 채		
1. 파 생 상 품		
2. R P 매 도		
3. 기타 운용부채		

II.기 타 부 채	262,138,782	648,061,440
1. 매도가능증권미지급금		
2. 정 산 미 지 급 금		
3. 해 지 미 지 급 금		
4. 수 수 료 미 지 급 금	10,061,523	8,270,408
5. 미지급 이익분배금	252,077,259	639,791,032
6. 기 타 미 지 급 금		
부 채 총 계	262,138,782	648,061,440
자 본		
I. 원 본	24,028,316,054	42,937,751,696
II. 이 익 잉 여 금	-6,194,058,983	6,804,174,336
자 본 총 계	17,834,257,071	49,741,926,032
부 채 및 자 본 총 계	18,096,395,853	50,389,987,472

다. 손익계산서 (단위:원)

계 정 과 목	제 2 기 반기	제 1 기
	08.04.13~08.10.12	07.04.13~08.04.12
I. 운 용 수 익	-8,582,735,746	11,485,241,595
1. 투 자 수 익	13,538,431,539	68,913,823
이 자 수 익	11,494,223	20,957,256
배 당 금 수 익	13,522,597,241	
수 수 료 수 익	4,340,075	47,956,567
기타 투자수익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2,792,486,357	14,042,608,548
지분증권매매/평가차익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수익증권매매/평가차익	2,792,486,357	14,042,608,548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외환거래/평가차익		
기 타 이 익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24,913,653,642	2,626,280,776
지분증권매매/평가차손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수익증권매매/평가차손	24,913,653,642	2,626,280,776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손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외환거래/평가차손		
기 타 차 손		

II.운 용 비 용	7,133,273	12,972,481
1. 운 용 수 수 료		
2. 판 매 수 수 료		
3. 수 탁 수 수 료		
4. 지 급 수 수 료	960,310	2,033,536
5. 기 타 비 용	6,172,963	10,938,945
III. 당기순(손실)이익	-8,589,869,019	11,472,269,114
1,000 좌당 순(손실)이익	-357	267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종류(클래스) A] (단위 :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07.04.13~08.04.12	0	0	378	400	222	241	156	156
08.04.13~08.10.11	156	177	66	58	48	44	174	174

*** 기간 중 재투자** (단위:좌,원)

기간	기간중 재투자	
	좌수	금액
07.04.13~08.04.12	0	0
08.04.13~08.10.11	2,176,191,199	2,175,852,447

[종류(클래스) C1] (단위 :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07.04.13~08.04.12	0	0	484	486	378	409	106	106
08.04.13~08.10.11	106	120	35	32	42	38	99	99

*** 기간 중 재투자** (단위:좌,원)

기간	기간중 재투자	
	좌수	금액
07.04.13~08.04.12	52,950,263	58,760,741
08.04.13~08.10.11	1,373,358,514	1,372,962,828

[종류(클래스) C2] (단위 :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07.04.13~08.04.12	0	0	0	1	0	0	0	0
08.04.13~08.10.11	0	1	0	0	0	0	0	0

*** 기간 중 재투자** (단위:좌,원)

기간	기간중 재투자	
	좌수	금액
07.04.13~08.04.12	52,950,263	58,760,741
08.04.13~08.10.11	1,373,358,514	1,372,962,828

[종류(클래스) C3] - 현재 설정되어 있지 않음

[종류(클래스) Ce] (단위 :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07.04.13~08.04.12	0	0	6	7	1	1	6	6
08.04.13~08.10.11	6	6	5	5	4	3	7	7

*** 기간 중 재투자** (단위:좌,원)

기간	기간중 재투자	
	좌수	금액
07.04.13~08.04.12	0	0
08.04.13~08.10.11	38,812,704	38,810,624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자산운용협회(www.kofia.or.kr)전자공시사이트에 게시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 연평균수익률(세전기준) (단위:%)

기간	최근 1 년	설정일이후
	08.01.31 ~ 09.01.30	07.04.13 ~ 09.01.30
종류 A	-31.44	-12.10
종류 C1	-32.00	-12.78
종류 C2	-30.74	-2.21

종류 Ce	-31.71	-23.05
투자신탁전체	-29.96	-10.28
비교지수	-23.96	0.99

* 비교지수 : FTSE Gold Mines 90% + 콜론 10%

*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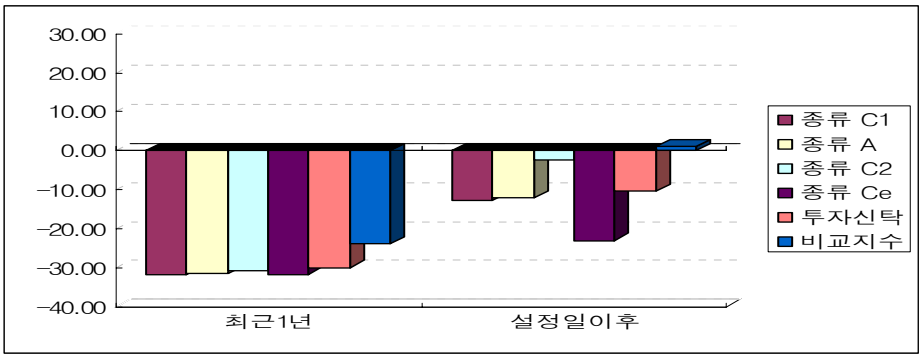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단위:%)

기간	최근 1 년차	최근 2 년차
	08.01.31 ~ 09.01.30	07.04.13 ~ 08.01.30
종류 A	-31.44	15.56
종류 C1	-32.00	14.88
종류 C2	-30.74	
종류 Ce	-31.71	
투자신탁전체	-29.96	17.38
비교지수	-23.96	33.86

* 비교지수 : FTSE Gold Mines 90% + 콜론 10%

*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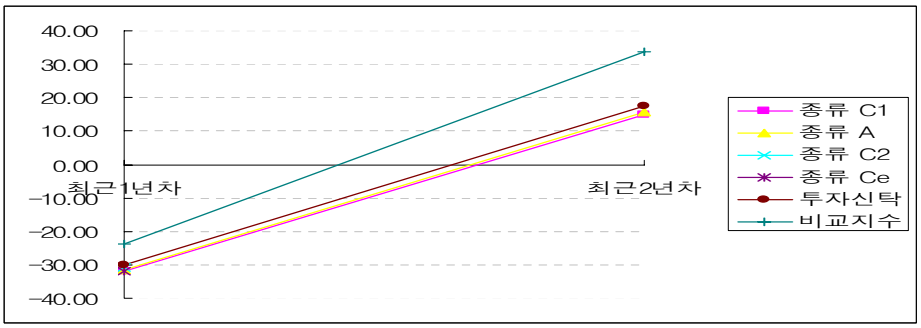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09.01.30기준,단위:백만원,%)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 대출 및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20,403 (98.43)						272 (1.31)	54 (0.26)	20,729 (100.00)
합계				20,403 (98.43)						272 (1.31)	54 (0.26)	20,729 (100.00)

[이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인 기은SG 골드마이닝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의 자산구성현황]

(09.01.30기준,단위:백만원,%)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 대출 및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CAD	8,504 (41.55)					10 (0.05)				8 (0.04)		8,522 (41.64)
USD	5,433 (26.54)									726 (3.55)		6,158 (30.09)
AUD	2,020 (9.87)									2 (0.01)		2,023 (9.88)
ZAR	856 (4.18)											856 (4.18)
HKD	307 (1.51)											307 (1.5)
GBP	50 (0.24)											50 (0.25)
KRW					508 (2.48)	-21 (-0.1)				2,063 (10.08)		2,550 (12.40)
합계	17,170 (83.9)				508 (2.48)	-11 (-0.05)				2,799 (13.68)		20,466 (100)

(1) 이 투자신탁의 주요투자대상자산의 자산구성현황 (단위:원,%)

구분	신용등급	총투자금액	비중
기타	단기대출	271,561,522.00	1.31
기타	기타	53,807,342.00	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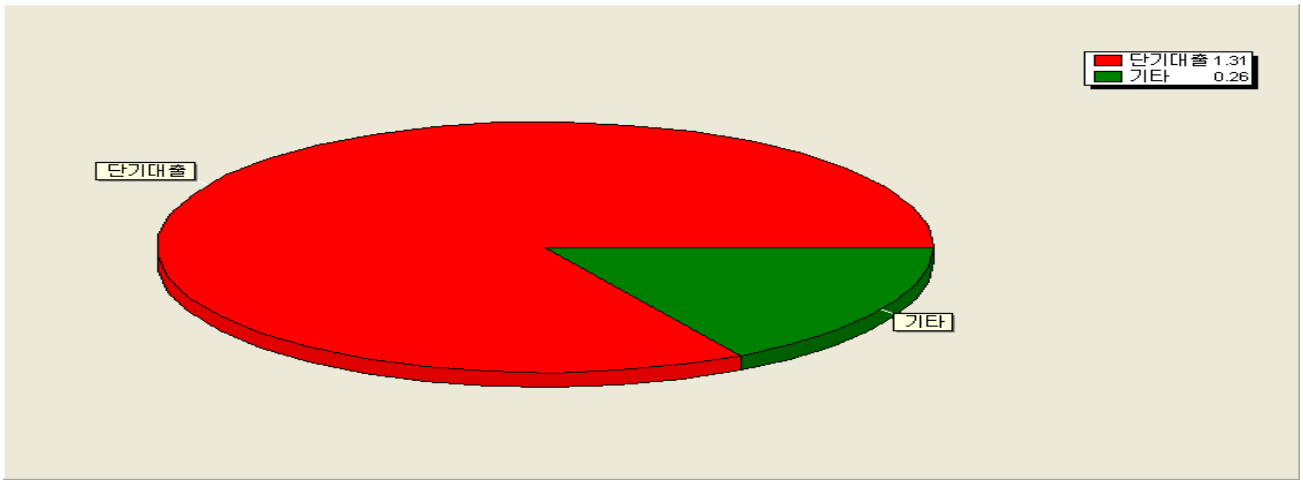

(2) 모투자신탁의 주요투자대상자산의 자산구성현황 (단위:원,%)

구분	신용등급	총투자금액	비중
기타	단기대출	2,798,723,416.00	13.68
기타	기타	0.00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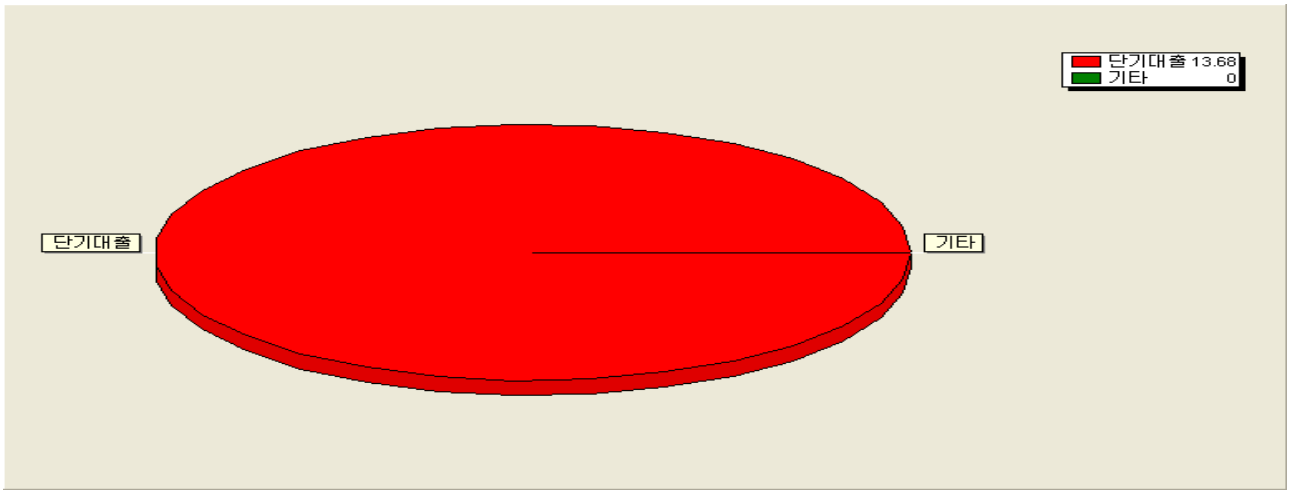

[해외주식] (단위:원,%)

국가	평가액	비중
US	10,779,917,474.	39.06
CA	9,232,525,101.	33.45
AU	5,380,118,976.	19.49
ZA	930,531,106.	3.37
HK	921,213,630.	3.34
CN	307,071,210.	1.11
GB	50,040,670.	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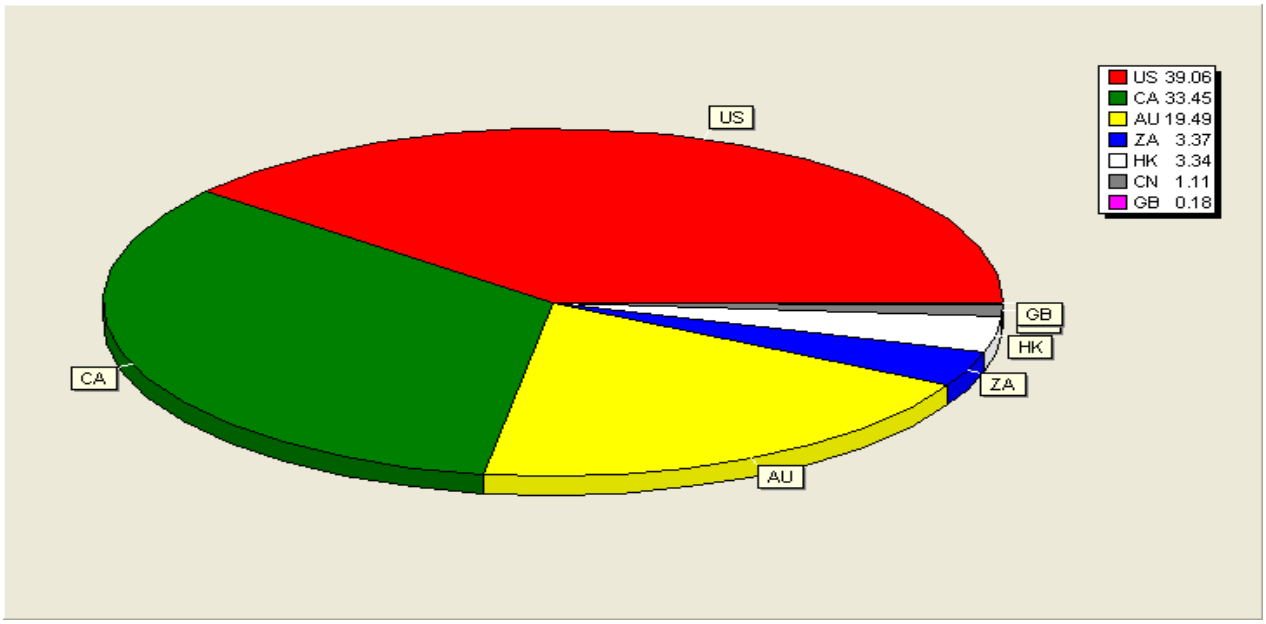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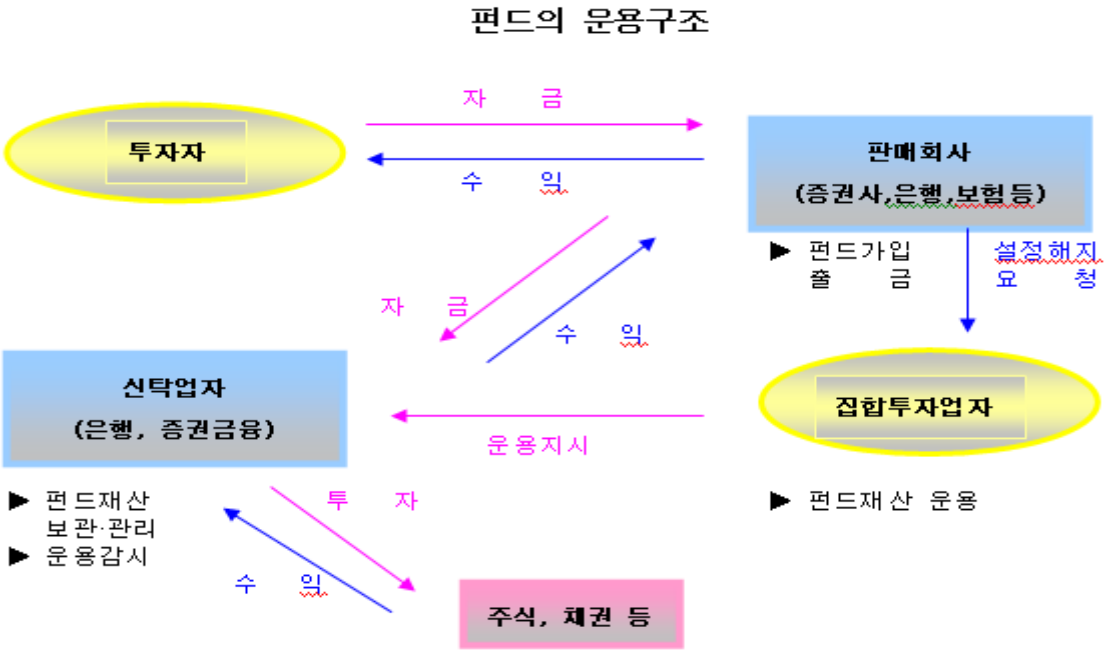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2009.01.30기준)

회사명	기은 SG 자산운용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 가 87 (연락처 : 02-727-8800, www.ibksgam.com)
회사 연혁	2004. 10.26 기은 SG 자산운용 설립
자본금	200 억
주요주주현황	중소기업은행 (50%), Société Générale Asset Management (50%)

나. 주요업무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억원)

[요약 대차대조표] [요약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2008.3.31	2007.3.31	계정과목	'07.4.1 ~'08.3.31	'06.4.1 ~'07.3.31
현금및예치금등	206	174	영업수익	132	97
유형자산등	55	45	영업비용	89	67
자산총계	261	219	영업이익	43	30
기타부채	23	12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1	
부채총계	23	12	경상이익	44	30
자본금	200	200	당기순이익	31	20
이익잉여금	38	7			
자본총계	238	207			

라. 운용자산 규모

(2009.01. 30 현재,단위:억원)

집합투자 기구종류	증권					부동산	특별 자산	혼합 자산	MMF	총계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파생	재간접					
수탁고	2,637	9,549	5,133	2,257	416	-	-	-	66,331	86,323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업무의 위탁]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한 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고 있으며,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은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게 있습니다.

①업무 위탁 집합투자업자 및 내용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Société Générale Asset Management S.A
업무위탁범위	운용업무,운용지시,단순매매주문업무

②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개요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명	Société Générale Asset Management S.A
설립일	1996년 3월 14일
회사주소	170, place Henri regnault 92043 paris-La Defouse cedex France 전화번호: +33 156 37 80 00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시티은행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39 ☏ 02)1588-7000
회 사 연 혁 등 (홈 페 이 지 참 조)	www.citibank.co.kr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① 신탁업자가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펀드서비스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 02-2014-2000
회 사 연 혁 등 (홈 페 이 지 참 조)	1999. 설립 (www.scffs.co.kr)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채권평가	나이스채권평가	KIS채권평가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11 광화문빌딩 9층 ☏ 02-399-335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번지 한섬빌딩 5층 ☏ 02-398-390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한국화재보험협회빌딩 4층 ☏ 02-3215-1400
회 사 연 혁 등 (홈 페 이 지 참 조)	2001.05 설립 (www.koreabp.com)	2000.06. 설립 (www.npricing.co.kr)	2000.06. 설립 (www.bond.co.kr)

나.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1) 투자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 총회를 두며, 수익자 총회는 이 법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 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수익자는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등이 받는 보수, 그밖의 수수료의 인상, 신탁업자의 변경,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신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제188조제2항각호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 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약관·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그 매출되는 증권의 소유자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

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자산운용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3)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에 기재된 서류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2)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3)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가)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나) 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경우

(다) 집합투자업자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여 운용하는 경우(법 제230조제3항에 따라 그 집합투자증권이 상장된 경우에 한한다)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경우

(라)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없는 경우에는 최초설정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가) 투자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나) 신탁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신탁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경우

(다)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자산보관·관리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3)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법 제247조제5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공시하여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②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알리는 방법

③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 총회를 거치는 경우는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 투자설명서의 변경 /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구체적인 행사내용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증권거래 및 장내파생상품거래]

▶ 중개회사 선정 목적 및 필요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기준은 바탕으로 중개회사의 역량 및 서비스 질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수행하여 거래 중개회사를 선정함으로써 운용의 투명성 및 펀드 수익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 평가 항목

중개거래시장점유율, 거래관련자격보유, 조직 및 인력현황, 리서치 서비스의 질, 감독기관 제재 및 시정조치내역, 결제안정성, 시장정보 제공능력, 매매체결의 신속성, 거래관련 보안유지 능력, 세미나 개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개회사를 산정합니다.

▶ 선정방법

평가방법을 Manager, Analyst, Trader등 중개사와 업무적으로 관련 있는 담당자들이 분기 1회 이상 배점방식에 의해 평가항목별 점수를 평가하여 중개회사를 선정합니다.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붙임] 용어풀이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 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혼합형 펀드로서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주식, 채권, 특별자산,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폐쇄형	환매가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투자자총회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름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선물환거래	미래의 거래 환율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는 거래를 말합니다.
금리스왑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여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하여 사모 펀드에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전환사채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증서로 주식옵션과 유사합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고객 보관용)

◆ 집합투자기구(펀드)명칭 :	기은SG 골드마이닝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 판매직원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1.	**투자설명서**를 받으셨나요?(간이투자설명서 포함)
	2.	판매회사는 귀하의 **투자목적이나 투자경험 등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그 상품에 대하여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를 이용하여 설명**을 해야 하는데 설명을 받으셨는지요?
	3.	위의 절차에 따라 **권유받은 이 상품이 귀하께 적합**하다고 생각 하시나요?
	4.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해당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자료를 제공받고 설명을 들으셨나요?
	5.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라면 **환율변동 위험과 그 회피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6.	펀드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특히,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라면 불리한 상황에서의 **최대손실예상금액 등을 포함하여 손익구조**에 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위 질문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신중한 판단을 하신 후에 최종 투자결정을 내리셔서 귀하께서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입으시는 경우가 없도록 한층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절취선

(판매직원 성명: 서명) (고객 성명: 서명 또는 인)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판매회사 보관용)

◆ 집합투자기구(펀드)명칭 :	기은SG 골드마이닝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 판매직원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고객 확인 사항		고객기재사항
	1.	**투자설명서**를 받으셨나요?(간이투자설명서 포함)	(받았음)
	2.	직원으로부터 이 상품에 대하여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를 이용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3.	이 상품이 **귀하의 투자목적이나 투자경험에 비추어 적합**하다고 생각 하시나요?	(적합함)
	4.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해당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자료를 제공받고 설명을 들으셨나요?	(제공받고 들었음)
	5.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상품**라면 환율변동 위험과 그 회피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6.	펀드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특히,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면 불리한 상황에서의 최대손실예상금액 등을 포함하여 손익구조에 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년 월 일

고객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